

200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0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2002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세입결산액 (B)	B/A (%)	세출결산액 (C)	C/A (%)	잉여금 (D)	D/A (%)
계	220,390,128	242,350,075	109.96	155,667,219	70.63	86,682,856	39.33
일반회계	194,829,490	215,927,843	110.82	146,810,214	75.35	69,117,629	35.47
특별회계	19,248,010	19,836,340	103.05	3,279,176	17.03	16,557,164	86.02
공 기 업	6,312,628	6,585,892	104.32	5,577,829	88.35	1,008,063	15.97

나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B/A (%)	수 납 액 (C)	C/A (%)	미수납액 (D)	D/B (%)
계	220,390,128	246,722,288	111.95	242,350,075	109.96	4,372,212	1.77
일반회계	194,829,490	219,372,679	112.60	215,927,843	110.83	3,444,836	1.57
특별회계	19,248,010	20,039,123	104.11	19,836,340	103.06	202,783	1.01
공 기 업	6,312,628	7,310,486	115.81	6,585,892	104.33	724,593	9.91

다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C/B (%)	이월액 (D)	D/B (%)	불용액 (E)	E/B (%)
계	220,390,128	260,600,749	155,667,219	59.73	95,609,602	36.69	9,323,928	3.57
일반회계	194,829,490	228,503,654	146,810,214	64.25	76,195,276	33.35	5,498,165	2.41
특별회계	19,248,010	25,120,164	3,279,176	13.05	18,345,506	73.03	3,495,482	13.92
공 기 업	6,312,628	6,976,931	5,577,829	79.95	1,068,820	15.32	330,281	4.73

라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 조 금 집행잔액	순세계잉여금
계	86,682,856	56,331,881 (10,405,164)	6,137,067 (4,725)	19,360,103 (3,370,662)	538,795	4,315,010
일반회계	69,117,629	53,426,464 (9,781,193)	6,047,347 (4,725)	5,810,547 (1,125,000)	519,826	3,313,445
특별회계	16,557,164	2,855,417 (473,971)	0	13,190,939 (1,825,179)	18,969	491,839
공 기 업	1,008,063	50,000 (150,000)	89,720	358,617 (420,483)	0	509,726

※ ()자금없는 이월액 : 이월액에는 포함안됨.

마. 예비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지출결정액	지출원인행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311,403	288,487	288,487	0	22,916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췌서” 붙임

- 지방자치법 제125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

나. 기타사항

-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붙임
-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붙임

관 계 법 령 발 취 서

지 방 자 치 법

第125條(決算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80日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決算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 (개정 1999. 8. 31)

지 방 제 정 법 시 행 령

제38조(세입·세출결산의 제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채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.